

#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75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5. 02. 허옥희 의원 등 4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5. 16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5. 31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허옥희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3조)
- 2) 군수의 책무 및 장려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 및 제5조)
- 3) 등록창구 설치·운영 및 장려 사업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4)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5) 비밀 준수 의무(안 제9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1호
  - 예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5. 13.(월) [5일간]
 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○ 본 제정조례안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
◦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고,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음.

- 군수의 책무 및 장려계획의 수립(안 제4조~제5조)

◦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과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발굴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

◦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분석·평가하도록 하였음.

- 기증 등록창구 설치·운영 및 장려사업 지원(안 제6조~제7조)

◦ 보건소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·운영하고

◦ 기증 장려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예우 및 지원(안 제8조)

◦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비밀 준수 의무(안 제9조)

◦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